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생활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 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 존중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 할 책임
3.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 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 준수의 책임
6. 학생 서로 존중하여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 준수의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에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8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제16조, 제 21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2장 학생 생활

제9조(기본행동)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3조(학급 및 수업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⑪ 세부 운영 방법은 [별첨1]에 따라 시행한다.

제14조(휴식시간)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다만

최소의 범위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③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⑤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⑥ 식생활관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⑦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⑧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⑨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⑩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5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분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⑨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제16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유통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에 필요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⑤ 세부 운영 방법은 [별첨 2]에 따라 시행한다.

제 3장 생활교육 위원회

제18조(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 생활교육 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19조(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4장 학생생활교육

제20조(소지품 검사)

① 교원은 학생이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학생 성별에 맞게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며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⑤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세부 운영 방법은 [별첨 2]에 따라 시행한다.

제21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핸드폰, 웨어러블 기기, 이어폰 등 전자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세부 운영 방법은 [별첨 2]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학생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1일(2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일(4시간) 이내로 하고, 주말 및 휴일에 실시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하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줌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함
4. 제20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전북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장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제24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 및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⑪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⑫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학생생활규정 개정)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

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分課) 모임 등의 회의

3. 교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⑤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2024. 2. 14.>

이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년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징계기준(2023.11.개정안)

구분	항	징 계 대 상	징 계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자주한 학생	○				
	2	언행이 바르지 못하여 지도를 자주 받아 온 학생	○				
	3	언행이 불량하여 주인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동 및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
준법	5	고의적으로 기물, 교육 기자재 등 학교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	○	○			
	6	무면허 운전, 불법 튜닝, 헬멧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학생	○	○	○		
	7	공공문서나 인장 등을 변조 또는 위조하여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
	8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9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학생	○	○	○	○	
	10	사법기관에 구속되었거나 형사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11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되었으나 범법행위가 인정된 학생		○	○	○	○
	12	일과시간 외 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 및 실험·실습실에 출입한 학생	○	○			
	13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에 불응한 학생	○	○	○	○	○
	14	고의적인 방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15	징계 및 생활교육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6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학교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수업 및 고사	17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18	고사 중 부정행위와 이에 동조했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19	집단으로 시험 거부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20	학교 통신망을 도용하거나 시험문제를 절취, 누설한 학생		○	○	○	○
근태	21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의 합(습)이 10회에 달한 학생	○	○	○		
	22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3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	
	2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	○	○		

구분	항	징 계 대 상	징 계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흡연 및 약물	25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한 학생 및 그 행위에 도움을 준 학생	○	○	○	○	
	26	흡연 및 음주를 한 학생	○	○	○	○	
	27	흡연 및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	○
	28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흡입·복용·유통하거나 이에 도움을 준 학생		○	○	○	○
퇴폐 행위	29	불법 도박, 온라인 토토 등 사행성 행위를 한 학생	○	○	○		
	3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1	불량 및 음란 서적·비디오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32	불량 및 음란 서적·비디오 등의 제작, 대여, 매매에 참여한 학생		○	○	○	○
	33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	○		
	34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금품	35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칙을 문란케 한 학생	○	○	○	○	○
집단	36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37	학교의 허가 없이 불량(일진회 등, 교육목적이 아닌 모임) 모임을 조직·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38	학교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39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40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도록 학생들을 선동한 학생			○	○	○
	41	불법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사 이 버	42	음란, 퇴폐, 폭력적 사이트·SNS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학생	○	○	○	○	○
	43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도용한 학생	○	○	○	○	○
	44	불법으로 해킹 또는 크래킹을 한 학생	○	○	○	○	
기타	45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6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47	생활교육위원회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한 학생			○	○	○

[별첨 1]

○ 학생 분리(제5조 관련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수업권,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	가	훈육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으로 이동 (수업 시간 내 일부) ※ 실습수업 경우에는 ‘나’에 따른 지도를 따른다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한다.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각 교무실 (수업 종료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다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가 누적되었을 경우	각 가정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가정학습 실시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각 교무실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 10분 내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훈육에도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각 교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은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별첨 2]

○ 학생 소지품 검사 (제20조 소지품 검사) 및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제15조, 16, 17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정보통신 윤리, 전자기기 사용)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소지품 검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휴기, 담배, 술,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인성인권안전부실(5일)	· 제10조 소지품 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전자기기(예시) 핸드폰, 웨어러블 기기, 이어폰 등	- 교실(교육활동 시간)	· 학생에게 제출을 요구한 뒤 교원이 보관 · 교육활동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휴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인성인권안전부실(5일)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교원이 보관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5일 경과 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② 생활지도 방법

1. “조인”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 “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일 자	2024. 11. 1. (금)		확인(서명)	특별실 담당자
	교시	수업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내 용	1	장00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00(5/1,7/5)
특이 사항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보호자님께!

0000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63-634-0000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2024년 00월 00일

한국경마축산고등 학 교 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OOO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2		학생과의 관계()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옆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귀하

성찰하는 글쓰기

(1/1 쪽)

일자	년 월 일 요일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